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금융 기업	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중대재해 건설/부동산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함.
국회 계류안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③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 처벌대상을 하수급인에서 건설사업자까지 확대. 등록 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을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처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공포 법령	ESG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및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
입법/행정예고	건설/부동산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충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49dB(데시벨)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의 뱀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이용우 (더불어민주당)</p>	<p>상법 일부개정법률안</p>	<p>■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p>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D2E0S3U1A4W0V9T0Y2V0X1D9L0G2</p>		<p>22.03.22. 제안</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서동용 (더불어민주당)</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R2U0M3E1H6Q1M4R2D5S0R2G2U1B0</p>	<p>아시아경제 22.03.24. 서동용 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p> <p>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416212295058</p>	22.03.24.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 처벌 대상은 하수급인임. 불법 하도급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그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함.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 처벌 대상 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까지 확대하려 함.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아울러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함. 건설공사 안전제고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안 제29조제7항, 제29조의2제1항, 제82조제1항제4호의2 · 제4호의3 및 제83조제7호 · 제7호의2).	조선일보 22.03.29. 근로자 5명 이상 사망땐 바로 등록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3/29/JNHND04AZNECFPZMZVD7M4M4E/	21.09.14. 제안 21.12.2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A1N0N9S0R7J1O3H4V1B1Y5N6G1A1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연합뉴스 22.03.2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0588500530?input=1195m	22.03.25. 제정 22.03.25.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p>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p>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p> <p>마.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7조)</p> <p>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 정부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기관</p> <p>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p> <p>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부터 제27조까지)</p> <p>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축산, 산업·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체</p> <p>2)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함.</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사.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 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p>아.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제32조부터 제38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p>자.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제41조부터 제43조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p> <p>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9조)</p> <p>1)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p> <p>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지역을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p> <p>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제64조부터 제69조까지)</p> <p>1) 기획재정부장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p> <p>2)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함.</p>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p>■ 제안이유</p> <p>충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충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충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p> <p>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60조의 8 신설)</p> <p>다.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안 제60조의 9 신설)</p> <p>라.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안 제60조의 10 신설)</p> <p>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935</p>	<p>동아일보 22.03.28. 8월부터 아파트 완공된 현장서 충간소음 검사</p> <p>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27/112556270/1</p>	22.03.28. ~ 22.05.09.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매일경제][사설]중대재해법 폐해 방치하다 이제야 손질하겠다는 고용부 '뒷북'(2022.03.28.)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3/276791/>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함. “산업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그런 걱정을 철저히 외면해온 고용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 와서야 문제점 손질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뒷북'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인력과 시설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 경영자 처벌과 공백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면책 조항을 도입해야 함.

[한겨레][사설]노동부에 '재계 우려' 전달한 인수위, 중대재해법 후퇴 없어야(2022.03.25.)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6319.html>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함. 끊이지 않는 ‘일터의 죽음’을 막고자 어렵사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논리’에 밀려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음.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 ‘꼬리’(시행령)가 ‘몸통’(모법)을 흔드는 일은 이전에도 왕왕 있었음. 현실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윤 당선자의 ‘의중’을 살피 노동부가 중대 산업재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점.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줄을 이어 노동부가 여러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노동부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 산재 사망을 줄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깊이 새기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한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서울신문][기사]중대재해, 같은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2022.03.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30500096&wlog_tag3=naver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함.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기업 650곳이 대상이며,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보름동안 이들 650곳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요청한 바 있음. 감독 결과는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에 안내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할 방침.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할 예정.

[한국경제][기사]"몸값 올리자"...'중대재해법 시대' 응시자 42% 급등한 자격증(2022.03.2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262555i>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산업재해 빈발 분야로 알려진 건설 관련 안전자격증인 건설안전사업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경우 지난해 응시자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42.7%, 4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공단이 최근 5년간 '안전'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는 전 자격증에 걸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21년에는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전체 숫자는 전년 대비 17.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기업법무그룹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공정거래그룹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